

#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·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‘강원도 관광재단’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,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재단설립 목적(안 제2조)

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

### 나.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 11개 사업 규정

### 다. 재정지원, 공유재산 대부·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4~5조)

-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, 공유재산 대부·사용 허가 가능

### 라. 업무의 위탁·대행,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6~7조)

- 관광진흥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에 업무 위탁·대행 가능
-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가능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당초예산 30백만원 반영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9. 14. ~ 10. 5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재단의 설립)**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관광자원 개발, 국내·외 관광 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
2. 국내·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
3. 기업회의, 인센티브 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, 크루즈 등 육성 지원
4.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
5.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6.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7. 국내·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
8.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
9.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

10.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

1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

**제4조(재정지원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*제5조(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)**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6조(업무의 위탁·대행)**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**제7조(공무원의 파견)**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**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,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「강원도 관광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[붙임]

## 관련 법령 발취

###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### 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[붙임]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4조(재정지원)

⇒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문화관광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-2250